

하천법 시행령

<목 차>

1.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사전 고지
2. 납부대행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3.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4.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작 성 자	이름	박재철
	담당부서 (과)	하천안전팀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송호석		연락처	044-201-7538
	과장	이현주		이메일	jaechul90@mail. go.kr

2026. 05. 13.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송호석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사전 고지											
	2.규제조문	하천법 시행령 제 34조 제4항											
	3.위임법령	하천법제 33조 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5.20~2026.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하여 하천의 치수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 강조 ○ 하천 내 점용허가 신청 시 설계도 등 제출하고 있으나, 점용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명시적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 ○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관리청에 미리 알리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허가 단계에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7.규제내용	○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 명문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점용허가 신청자</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점용허가 신청자		이해관계자	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점용허가 신청자											
이해관계자	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												
9.규제목표	○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사전에 인지하여 허가 단계에서 치수·안전 보완 대책 등을 마련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미해당									

		예외기준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하천관리청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추진배경

-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하천의 치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하천 내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절개, 굴착,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해 하천시설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현행 제도에서는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설계도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시설 설치 과정에서 하천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천시설 영향 검토 및 원상복구 계획 등을 사전에 고지·명확화하는 규정은 미흡
 - 하천관리청은 허가 과정에서 하천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이 허가 신청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술검토 과정에서도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함
- 실제 허가 신청인이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므로, 하천점용공사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하천시설 훼손 여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주체임
- 따라서, 하천점용공사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하천시설 훼손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하천관리청에 훼손 우려사항을 알리고 원상복구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검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참고>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난원인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조사 결과에서 사고방지를 위해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훼손 우려사전 고지 의무"에 대한 권고 내용이 포함됨

※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한 하천점용허가 내용에도 미호강 제방을

훼손, 복구한다는 내용은 누락 되었으며, 시공사는 도로공사과정에서 임의로 제방을 훼손하고 부실하게 복구해, 인명피해(사망 14명, 부상 10명) 사고의 원인이 됨.

(2) 정부개입의 필요성

- 본 규제는 점용허가 신청자가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하천관리청에 사전에 알리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허가 단계에서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정조치로 판단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훼손 우려 사전 고지 의무
	내용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점용허가 신청자가 관할 하천관리청에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하천점용 공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하천시설 훼손 및 복구에 대한 내용을 사전 검토, 관리 가능 - 하천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 본 대안은 기존 제출서류 체계 내에서 추가적인 사실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예방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행정안전부 난안전조사과	'25.10.17~	사전고지의무 등 제도 개선 포함	반영

3. 규제목표

- 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허가 과정에서 치수 안전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하천의 이용·관리 및 공공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점용허가 신청 시 추가적인 사실 고지 의무를 명문화하여 기존 허가 절차 내에서 위험 정보를 명확히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본 제도는 하천의 관리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규정으로 일몰미설정이 타당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타 법률에서도 관련 공사로 인해 기존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제35조(시설의 시공·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④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5항·제7항, 제8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정의 취지상 하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제방 등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당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설계도 및 공사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실제 공사 과정에서 하천시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허가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이미 하천시설 훼손 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음
- 본 규정은 이러한 실무 관행을 법령상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기술적·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는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하천관리청은 기존 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설계도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전 고지 사항을 허가 과정에 반영하는 데 별도의 조직 신설이나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지 않아 행정집행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본 규제는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업무는 기존 인력과 조직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폭우로 인한 미호천교 제방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23.7)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기후부고시) 개정('24.4.29)
 - 제방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검토사항 누락 방지를 위해 점용허가 시 전문가 기술검토 의무화 규정 신설
- 오송지하차도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25.9)
 - 국정조사 후속조치인 관계기관 재난원인조사 지적사항에서 공사 정보 공유체계 보완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25.10)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 이후 점용허가 과정에서 사전 고지 이행 여부 및 허가 조건 부과 사례 등을 분석하여,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으로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지침을 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 본 제도는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규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치수 안전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라 판단되며,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나 행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허가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제도라는 점에서 비례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규제라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납부대행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2.규제조문	하천법 시행령 제 44조의2 제1항 및 제2항											
	3.위임법령	하천법제 37조의2 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5.20~2026.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하천법 개정(' 26.3)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방법으로 신용카드 등 전자적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전자결제 방식 도입으로 납부대행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정 취소 사유 및 수수료 상한 설정 등 최소한의 규정 필요 ○ 납부대행기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공공재정 보호 및 납부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정부개입으로 판단됨											
	7.규제내용	○ 금융결제원 등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축소·자본금 감소·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대행수수료 상한(1%)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전자결제기관(금융결제원 등)</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점용료등 납부자, 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자결제기관(금융결제원 등)		이해관계자	점용료등 납부자, 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자결제기관(금융결제원 등)											
이해관계자	점용료등 납부자, 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												
9.규제목표	○ 신용카드 등의 전자결제 방식 도입을 위한 납부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수입 수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미해당									

		예외기준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2(신용카드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납부) ① 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

현 행	개 정 안
	<u>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u> ③ 법 제3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대행 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하천관리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추진배경

- 「하천법」 개정('26.3.17)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 방법으로 신용카드 등 전자적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대통령령에서 납부대행기관의 범위, 지정 및 취소 요건,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발생함
- 점용료등과 변상금은 공공재산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해당하며 수납 과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 전자결제 방식 도입 시 납부대행기관의 재정 건전성, 업무 수행 능력 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거나 납부대행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납부대행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정 취소 사유 및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정부개입의 필요성

- 본 제도는 신용카드 등의 전자결제 방식 도입을 위한 납부대행기관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공공재정 보호 및 납부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정부개입으로 판단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점용료등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수수료 기준 설정
	내용	금융결제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결제기관을 납부대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축소·자본금 감소·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대행수수료 상한(1%)을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점용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규정을 마련하여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공공수입 수납의 안정성 확보 가능 - 납부대행수수료 상한 규정으로 납부자의 수수료 부담 방지 - 납부대행기관의 재정 건전성 감소,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의 경우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납부 제도의 신뢰성 제고	- 지정 절차에 따른 행정적 검토 필요

-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시장 자율에 맡겨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공공수입 수납 과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전자납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 신용카드 등의 전자결제 방식 도입을 위한 납부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수입 수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제도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수입 수납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과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며, 수수료 상한도 1% 범위로 제한하여 과도한 경제적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공공재정 보호, 납부자 권익 보호 등 공익 목적에 비추어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전자납부 제도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수납 체계에 관한 규정으로 한시적 규제가 아니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일몰 미설정이 타당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타 법률에서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인 납부대행기관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도로법 시행령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제71조제2항 단서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중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도로관리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제도의 피규제자는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결제원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행기관이며, 이들 기관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재무 건전성 및 정보보안 기준을 적용받고 있고 전자결제 인프라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본 제도에서 요구하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 요건은 기존 영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통상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범위 내의 기준으로 추가적인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하천관리청은 납부대행기관 지정 시 해당 기관의 재무현황, 시스템 안정성, 업무수행 실적 등을 서류 및 관계기관 확인을 통해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행정절차 내에서 충분히 수행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납부대행기관의 대부분은 이미 공공요금 수납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본 제도는 기존 점용료 수납 체계에 전자납부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납부대행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자납부 확대에 따라 납부 편의성이 제고되고 체납률 감소 및 수납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행안부 주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TF 운영('25.7)
-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법」 개정 논의(경제관계장관회의, '25.7)
 - 「하천법」 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및 관련 제도 정비로 점용료 등의 납부 방법 조항 신설 검토
- 「하천법」 개정('26.3 개정)
 - 하위법령으로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대행기관 관련 규정 마련 필요

2. 향후 평가계획

- 부령 제33조에 따라 점용료 등 수입금 징수 현황 등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시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함께 점검할 예정

3. 종합결론

- 본 제도는 「하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전자적 납부방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으로서,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납부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이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수입 수납 과정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고 납부대행수수료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전자납부 확대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본 제도는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이 충분하고 디지털 행정 환경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규제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모두 인정되는 제도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2.규제조문	하천법 시행령 제 79조의2											
	3.위임법령	하천법제 73조 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5.20~2026.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하천 내 불법 점용으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 급상승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 ※ 행안부 주관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점검·조치·감찰 추진 중(' 25.7~) ○ 현행 제도는 긴급한 상황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 집행 공무원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권 행사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최근에 하천법을 개정(' 26.3)하여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본 규정은 긴급한 위해 발생 우려 시 신속한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행정청의 재량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정부개입으로 판단됨											
	7.규제내용	○ 불법 점용 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 상황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불법 점용자, 피허가자</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불법 점용자, 피허가자		이해관계자	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불법 점용자, 피허가자												
이해관계자	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												
9.규제목표	○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로 수해 등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9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u>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1. <u>장비 진입로를 막거나 작업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긴급한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u> 2. <u>불법 시설물 등이 수위관측소, 수질측정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수문, 통문, 보 등 하천 시설의 정상적인 계측·감시 또는 작동·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u> 3. <u>대형 불법 시설물, 차량 및 야영용품 등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유실될 경우 하천시설에 걸려 수위의 급격한 상승 또는 시설물의 파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u> 4. <u>취수시설 인근 또는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위치에 불법 시설물 등이 적치되어, 유실되거나 오염물질 유출 시 수질오염 또는 용수공급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u> 5. <u>하천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u>

현 행	개 정 안
	<u>신체에 급박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u> <u>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하천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추진배경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적치물 등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 급상승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수해방지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계고·통지 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으나, 해당 긴급 상황의 구체적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 집행 공무원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권 행사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하천법」 개정('26.3.17)으로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정부개입의 필요성

- 본 규정은 새로운 강제수단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률에 규정된 긴급 상황에서 행정대집행 권한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긴급한 위해 발생 우려 시 신속한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행정청의 재량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정부개입으로 판단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내용	긴급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내용	불법 점용 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 상황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계고·통지 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긴급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시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집행의 탄력성 확보 가능	- 행정청 재량 범위 확대 우려 - 예측가능성 저하 - 위임입법 한계 논란 발생 가능성
규제대안2	- 계고·통지 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긴급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시 적용 범위 명확화로 집행 기준의 객관성 확보 - 행정권 남용 가능성 최소화 - 법적 안정성 확보	- 열거되지 않은 유사 사례 대응에 한계 가능성

- (대안2 선택) 본 제도는 포괄적·추상적 확대 해석을 방지하도록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였으며, 규제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 집행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 긴급한 상황에서 하천관리청의 신속한 조치로 수해 및 시설물 파손 등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제도는 하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조치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긴급한 경우로 행정대집행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본 제도는 하천의 안전한 관리 및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적 규정으로,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가 아니며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하므로 일몰미설정이 타당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타 법률에서도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존에는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불법 점용 등의 증가로 국민의 안전 등을 위협하면서 하천의 이용·관리·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천법이 개정됨('26.3.17)
- 본 제도는 이미 불법 점용 등으로 위법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후적 조치로 통상적인 하천점용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고려하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본 제도는 행정대집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구체화함으로써 집행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하천관리청은 기존 하천의 유지·관리 점검에서도 불법 점용물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조직 신설 등이 필요하지 않아 행정 집행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본 제도는 행정대집행 특례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행정대집행의 비용은 행정청이 점용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본 제도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행안부 주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TF 운영('25.7)
-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법」 개정 논의(경제관계장관회의, '25.7)
 -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 주는 경우 등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확대하는 조항 신설 검토
- 「하천법」 개정('26.3 개정)
 -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 주는 경우 등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마련 필요

2. 향후 평가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홍수기 전·중·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점검 시 불법 점용 등으로 인한 행정대집행 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할 예정

3. 종합결론

- 본 제도는 「하천법」에서 이미 규정한 행정대집행 특례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긴급 상황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권 행사 기준을 객관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자의적 집행 우려를 최소화하고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으로 판단됨
- 본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규정은 비례성·적정성·실효성을 모두 충족하는 합리적이며 최소한의 규제를 갖춘 적절한 제도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2.규제조문	하천법 시행령 제 108조 제1항 및 별표6											
	3.위임법령	하천법제 99조 제8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5.20~2026.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하천 내 불법 점용 등으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 급상 승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의무자가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 음 ○ 이에 따라 하천법이 개정('26.3)되어 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따라서 본 규정은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따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 한의 정부개입으로 판단됨											
	7.규제내용	○ 위반행위 유형별 이행강제금의 기준금액, 가중·감경 기준 등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불법 점용자, 피허가자</td><td></td></tr><tr><td>이해관계자</td><td>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불법 점용자, 피허가자		이해관계자	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불법 점용자, 피허가자												
이해관계자	하천관리청(국가, 지자체)												
9.규제목표	○ 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및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 하여 하천 내 위법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하천의 치수 기능과 공 공 이용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 해당 없음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신설>

<신설>

개정안

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별표 6]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0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이행강제금 금액이 가장 큰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 하천관리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1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다. 나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

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장기간 무단 점용한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하천의 치수 안전 및 수질 보전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2)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금액
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	300
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법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		1,000
	2)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00
	3) 그 밖의 사유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500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추진배경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적치물 등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 급상승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하천관리청이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하더라도, 의무자가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하천법」 개정('26.3.17)으로 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개입의 필요성

- 본 규정은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금전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제도로, 원상회복 명령 및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부과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위반행위별 기준금액과 가중·감경 기준을 함께 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개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내용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가중·감경 기준 등 마련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이 명확해져 행정집행의 일관성 확보 가능 - 의무자에게 사전 예측 가능성 제공 및 원상회복 명령·조치명령의 실효성 확보 가능 - 장기·상습 무단점용 억제 효과 기대	- 위반행위자에게 금전적 부담 발생

- 본 대안은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금액을 설정하면서도 가중·감경 기준을 함께 두어 획일적 운영의 한계를 보완했으며, 부과 전 3개월 이내의 계고 절차를 두고 있어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 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및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여 하천 내 위법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하천의 치수 기능과 공공 이용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제도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적법한 하천점용 또는 정상적인 하천 이용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반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면 추가적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제도의 주된 목적은 금전 부과가 아니라 자발적 이행을 촉진하는 제도임
- 또한 부과기준 역시 위반행위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 조항을 마련하여 하천관리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본 제도는 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및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천 내 무단점용, 원상회복 미이행, 조치명령 불이행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안이므로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가 아니며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하여 일몰미설정이 타당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타 법령에서도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도로법 시행령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 도로법 시행령 [별표 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9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1.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26조 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2호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금액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	200 600 1,000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000
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000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200 600 1,000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제도는 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하천점용허가 신청자나 적법한 하천 이용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피규제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으며, 부과 전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한 문서 제고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보장됨
- 또한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금전적 부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효과 및 규제 순응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감경 기준을 통해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본 제도는 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및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이미 하천관리청이 원상회복 등 명령을 한 대상 중 미이행 상태가 확인된 경우이므로 행정집행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본 제도는 기존 하천관리청의 행정명령 및 사후관리 업무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별도의 대규모 예산이나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한 규제는 아니므로 본 제도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행안부 주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TF 운영('25.7)
-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법」 개정 논의(경제관계장관회의, '25.7)
 - 「하천법」 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검토
- 하천법 개정('26.3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필요
 - 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및 조치명령 이행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2. 향후 평가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홍수기 전·중·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하천관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부과기준 적용 과정에서의 민원 등 검토할 예정

3. 종합결론

- 본 제도는 「하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및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행정명령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정도에 따른 가중·감경 기준과 계고 절차 등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집행의 일관성 등 하천관리 질서 확립과 치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갖춘 적절한 제도로 판단됨